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_주간보호_2026년】

서비스제공자와 이용 어르신의 신원인수인(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장기요양급여이용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한다.

1.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용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이하 “등외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계약 목적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어르신과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제반 의무사항을 명확히 정하기 위함에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 ① 장기요양등급이용 어르신은 장기요양재가급여한도액 이내에 이용하여야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등외자의 비용으로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한다. 주간보호서비스를 일 8시간 이상을 월 15일 이상 이용할 경우, 1등급과 2등급 어르신은 10%를 그리고 3.4.5등급 어르신은 한도액을 20% 추가 산정한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추가산정*	2,764,190	2,564,320	1,833,840	1,691,640	1,450,680	676,320

- ② 등급별 이용시간별 차등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정하여져 있고,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이용 어르신의 본인부담금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급여비용은 오후 6시이후 이용시간에 대해서는 20% 가산하고, 휴일 이용시간에 대해서는 30%가산한다.

이용시간	등급	2026년 표준수가	본인부담금			
			일반(15%)	감경(9.0%)	감경(6.0%)	의료(6.0%)
3시간이상 6시간미만	1등급	41,820	6,273	3,764	2,509	2,509
	2등급	38,720	5,808	3,485	2,323	2,323
	3등급	35,740	5,361	3,217	2,144	2,144
	4등급	34,120	5,118	3,071	2,047	2,047
	5등급	32,490	4,874	2,924	1,949	1,949
	인지지원	32,490	4,874	2,924	1,949	1,949
6시간이상 8시간미만	1등급	56,060	8,409	5,045	3,364	3,364
	2등급	51,930	7,790	4,674	3,116	3,116
	3등급	47,940	7,191	4,315	2,876	2,876
	4등급	46,300	6,945	4,167	2,778	2,778
	5등급	44,650	6,698	4,019	2,679	2,679
	인지지원	44,650	6,698	4,019	2,679	2,679
8시간이상 10시간미만	1등급	69,730	10,460	6,276	4,184	4,184
	2등급	64,590	9,689	5,813	3,875	3,875
	3등급	59,640	8,946	5,368	3,578	3,578
	4등급	58,010	8,702	5,221	3,481	3,481
	5등급	56,360	8,454	5,072	3,382	3,382
	인지지원	56,360	8,454	5,072	3,382	3,382
10시간이상 13시간미만	1등급	76,820	11,523	6,914	4,609	4,609
	2등급	71,160	10,674	6,404	4,270	4,270
	3등급	65,750	9,863	5,918	3,945	3,945
	4등급	64,090	9,614	5,768	3,845	3,845
	5등급	62,460	9,369	5,621	3,748	3,748
	인지지원	56,360	8,454	5,072	3,382	3,382
13시간이상	1등급	82,370	12,356	7,413	4,942	4,942
	2등급	76,310	11,447	6,868	4,579	4,579
	3등급	70,500	10,575	6,345	4,230	4,230
	4등급	68,860	10,329	6,197	4,132	4,132
	5등급	67,240	10,086	6,052	4,034	4,034

	인지지원	56,360	8,454	5,072	3,382	3,382
--	------	--------	-------	-------	-------	-------

③ 그 밖의 비용으로 식사비, 간식비와 기타 실비로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한다.

비급여 항목		기타 비급여 청구 항목
식사비	1식 2,500원	1. 어르신 개인 의료비 (병원진료, 약제비, 의료용품 등) 2. 어르신 개인 용도의 물품구입 (본인 또는 보호자의 요청) 3. 등외자 이용비용 : 30,000원/일
간식비	1일 1,000원(2회)	

5.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와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① 안전한 기관생활여건을 조성하여 안전하게 장기요양급여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 ② 이용 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③ 체결된 계약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할 의무

2)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① 어르신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에 대한 협조
- ② 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의 의무
- ③ 어르신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3)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 ① 이용 어르신과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 ② 이용 어르신이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 지 참관할 권리
- ③ 이용 어르신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
- ④ 이용 어르신이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6.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② 서비스 제공자가 주야간보호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서비스 제공자가 급여제공시간을 이용 어르신나 보호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 ④ 이용 어르신이 사망한 경우,
- ⑤ 이용 어르신의 등급이 변경 된 경우,
- ⑥ 이용 어르신이 건강검진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 병 환자로
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 될 때,
- ⑦ 어르신이 배회 또는 폭력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다른 어르신의 생활에 막대한 지
장을 줄 때,
- ⑧ 어르신이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⑨ 어르신이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주야간 보호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않을 경우,
- ⑩ 어르신 혹은 보호자가 3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